

대학혁신사업 관리 운영 규정

제정 : 2019. 03. 01.

개정 : 2020. 03. 06.

전면개정 : 2022. 08. 05.

담당 : 혁신사업단(02-950-4329)

----- 목 차 -----

제1조(목적)	제2조(용어의 정의)	제3조(적용범위)	제4조(조직)
제5조(대학혁신위원회)	제6조(대학혁신운영위원회)	제7조(사업관리)	제8조(행정지원)
제9조(성과 관리 및 자체 평가)	제10조(대학혁신자체평가위원회)	제11조(외부평가)	제12조(세부사항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부의 「대학혁신지원사업」(이하 “혁신사업”이라 함) 기본계획에 따라 한국성서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함)의 혁신사업 추진에 필요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전략과제”라 함은 혁신사업을 통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영역별 세부내용과 세부과제 및 세세부과제를 모두 포함하여 말한다.
2. “성과지표”라 함은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로 전략과제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측정하는 평가 준거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혁신사업을 수행하는 본교의 기관 및 부서와 이 규정에 따른 제위원회를 대상으로 적용한다.

제4조(조직) ① 혁신사업단은 단장을 두고, 영역별 총괄을 임명하여 대학의 모든 혁신사업을 총괄 관리하고 사업 운영 및 조정의 역할을 담당한다.

② 혁신사업 관리 및 실무 분담은 사업관리, 행정지원, 성과관리, 자체평가에 대해 각각 담당자 또는 관리자를 배치하고 혁신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.

제5조(대학혁신위원회) ① 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위원회를 둔다.

② 대학혁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의 교무위원급 내부위원과 학생위원 1인을 두어 구성하고 위원장은 총장이 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한다.

④ 대학혁신위원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혁신사업에 대한 전반의 종합계획 심의
2. 대학 내 전체 재정지원사업 성과의 총괄적 평가·환류
3. 투명성·공공성 강화를 위한 회계 모니터링
4. 기타 사업추진 및 운영 관리에 관련된 중요 사항

제6조(대학혁신운영위원회) ① 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운영위원회(이하 '운영위원회'라 함)를 둔다.

-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사업 총괄 책임자 중심의 내부위원 10인과 약간 명의 외부위원 및 학생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한다.
- ④ 운영위원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.
 1.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
 2. 핵심 및 자율 성과지표 관리
 3. 세부집행지침 마련
 4. 기타 사업의 전반적 관리

제7조(사업관리) ① 혁신사업의 사업관리부서는 혁신사업단으로 하고 사업단 실무를 총괄한다.

- ② 혁신사업단은 사업추진부서에서 수행하는 사업 전반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 하고 부적정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즉시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- ③ 삭제

제8조(행정지원) ① 혁신사업의 행정 지원은 일립행정본부가 담당하고 모든 사업비의 집행을 지원한다.

- ② 행정 지원은 본교 『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시행세칙』 과 그 외 본교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9조(성과관리 및 자체평가) ① 혁신사업의 성과관리는 성과관리실, 자체평가는 평가감사실이 맡고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.

- ② 혁신사업의 성과관리부서는 주기적인 사업성과 모니터링을 통해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핵심성과지표 및 자율성과지표를 관리한다.
- ③ 분기별 평가는 실적평가, 사업비 집행 평가, 핵심 및 자율성과지표 평가로 나누며, 성과분석은 산출평가, 성과평가, 사업비집행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.
- ④ 혁신사업의 성과관리 및 연차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학혁신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.
- ⑤ 평가감사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 1. 사업성과의 주기적 모니터링 사항 심의·자문
 2. 자체평가결과 논의 및 환류사항 도출

제10조(대학혁신자체평가위원회) ① 혁신사업의 목표 달성 및 성과·산출물의 질을 제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대학혁신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.

- ② 대학혁신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총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평가의 투명성·효과성 확보를 위해 혁신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교내 구성원 3명, 교외위원 2명 이상, 학생대표 1명으로 구

성하고 위원장은 평가감사실장이 된다.

③ 위원의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한다.

④ 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목표의 효과적 달성여부 점검을 위해 연 1회 이상 자체평가 및 환류를 실시한다.

제11조(외부평가) 대학혁신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, 혁신사업 성과 점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 전략과제의 성과에 대한 외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12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의 『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계획』 (교육부, 2022.2.14) 및 본교 제규정을 준용하되, 사업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.

부 칙

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.